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366호
2. 제 안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발의일자 : 2022. 10. 17.
4. 회부일자 : 2022. 10. 21.

II. 제안이유

- 실효성 있는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주체인 ‘학생-교원-학부모’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교육주체 상호 간의 존중과 협력에 기반한 인권친화적인 학교교육환경 조성하기 위함.

III. 주요내용

- 가. 교원이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공적 업무 전체를 ‘교육활동’으로 확대
- 나. 교육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주체별 책무 강조

다. 학교방문자의 학교 출입 관리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라. 학생이 교육활동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상담이나 치료 등의 조치 실시

IV.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2.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3.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 입법예고(2022. 9. 8. ~ 9. 28.) :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조례안 [별첨 2])

○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조례안 [별첨 3])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 (조례안 [별첨 4])

○ 학생인권영향평가 : 권고의견 있음 (조례안 [별첨 5])

○ 관계법규 : (조례안 [별첨 6])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22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366호로 제출되어 2022년 10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권 친화적인 학교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최근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환기됨에 따라 사회 각계 각층에서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수업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더욱이 지난 3년간 서울시교육청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현황을 살펴보면,¹⁾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주춤했던 교육활동 침해 행위 건수가 대면 수업 확대에 따라 급증하고, 전국적으로 학생의 교원 침해 사례가 언론에 대서특필 되는 등²⁾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2022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2번(교권보호 관련) 참조.

2) 국민일보(2022.12.5.), ““XX 크더라” “기쁨조”...고교생이 교사평가에 성희롱 글“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738129&code=61121211&cp=nv> (검색일 2022-12-11)

한국경제(2022.11.22.), “학생한테 머리채 잡히고 발길질 당했다...심각한 교권 침해“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112273977> (검색일 2022-12-11)

아시아경제(2022.10.19.), “[교권침해]사진 찍히고 뺨 맞고도 말 못하는 교사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101809045944096> (검색일 2022-12-11) 등 참조.

[표]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8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현황

학년도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유형											학부모에 의한 침해	기타	합계
	상해행 폭	협박	모욕훼손	손괴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이용법정보통신윤리법	공무및무형업무법	성폭력범죄의예외상황에관한법률	교육활동부당개입	그밖에학교이단행위	소계			
2020	15	5	65	0	3	2	13	13	9	1	126	11	17	154
2021	32	10	141	0	3	23	5	26	3	6	249	22	7	278
2022 (8월까지)	24	7	113	1	2	4	12	26	4	0	193	10	2	205

- 더욱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7월 12일부터 24일까지 전국 유·초·중등 교원 8,655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³⁾ 조사대상 교원의 61%가 하루에 한 번 이상 수업 방해 등 학생의 문제 행동을 접하고 있다고 답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이미 교육 현장에 일상화된 문제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국회는 지난 12월 8일, 학교장과 교원이 법령이나 학칙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⁴⁾ 의결하였고, 서울시교육청 역시 교원 안심공제 운영,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단 구성, 교육활동 침해행위 피해 교원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지원 등을 추진하며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와 같은 배경에서 동 조례안은 학교 구성원 간의 협력과 상호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날로 심각해지는 교권 침해 등의 현실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입법적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3)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보도자료(2022.7.25.), “교원 95% ”법에 생활지도권 보장 명시해야“ 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교원지위법 개정 촉구!”

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제안, 의안번호 21-18733)

나. 조례안의 체계와 주요 조문별 검토

1) 조례안의 체계

- 조례안은 제1조부터 제3조까지 각각 목적과 정의, 교육활동 보호 환경 조성의 기본원칙에 관해 명시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 교육감의 책무, 제5조에서 학생과 교직원·보호자의 책무,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각각 학교 내 안전 대책과 학교 교육활동 보장에 관해 규정하여 총 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조문 간 구성과 체계, 내용 전반에 있어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형식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다만, 안 제7조제2항제2호의 단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교원의 법적 대응을 위한 소송비 지원의 예외를 완결된 문장이 아닌 개조문 형태를 취하고 있는바,

이는 “자치법규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서술적인 문장으로 표시한다”⁵⁾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비추어볼 때 서술적인 문장 형태로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한편, 안 제8조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세칙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세칙은 행정기관의 사무처리 기준을 제시하거나 상급 기관이 하위기관의 권한 행사를 지휘·감독하기 위한 훈령 등과 같은 것인바,

학생이나 보호자 또는 기타 관계기관을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을 시행세칙으로 규정할 경우 학교 구성원 등의 교육활동 참여를 제한하는 기준이 교육감에 의해 자의적으로 설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5) 법제처(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18」, 314쪽.

○ 따라서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안 제8조를 수정하여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치는 시행규칙으로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 "교육활동"의 정의에 관한 의견(안 제2조제5호)

○ 안 제2조제5호는 '교육활동'을 "교원이 「초·중등교육법」 제20조 및 「유아교육법」 제21조에 따라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동 조문에서 '교원'은 안 제2조제4호가목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과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의 교원만을 의미하고 있어 학교 내에서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강사나 직원 등이 배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 현재 학교에는 조례에서 정의한 교원 외에도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⁶⁾ 근거하여 배치·운영되는 산학겸임교사와 영어회화 전문 강사, 다문화 언어 강사 또는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⁷⁾ 등이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사서직원이나 영양사 역시 각각 독서지도나 식생활 지도 등을 맡고 있습니다.

○ 이런 점에서 학교 운영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교원만을 교육 활동 보호의 대상으로 규정한 안 제2조제5항은 일부 보완이 필요한

6)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①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교에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공립 학교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유아교육법」 제23조(강사 등) ① 유치원에는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 외에 강사, 기간제 교사 또는 명예교사 등을 두어 유아교육을 담당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공립 유치원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치원에 두는 강사 등의 종류·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것으로 생각됩니다.

○ 더욱이 이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있어 교직원뿐만 아니라 교육활동참여자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볼 때 교육활동에 종사하는 모두가 교육활동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따라서 안 제2조제5호에서 다루고 있는 ‘교육활동’의 정의에 있어 “교원”을 “교직원”으로 수정하여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을 포괄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3) 학생·교직원·보호자의 책무에 대한 의견(안 제5조)

○ 안 제5조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생과 교직원, 보호자가 준수해야 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별 항목마다 학생에게는 정당한 교육활동의 존중을, 교직원에게는 교육 주체 간 협력적 관계의 형성과 유지 노력을, 보호자에게는 교육활동에 대한 협조와 학생의 적극적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안 제5조제1항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4조와⁸⁾ 내용이 상당히 중복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학생 인권과 교육활동 보호 관련 자치법규 체계의 복잡성을 증가시키거나 내용 전반을 알기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문 전반에 대해 신중한 조정·검토가 필요한

8)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고 정책을 수립할 경우 학생인권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보장을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학생은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 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존중하여야 한다.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안 제5조제1항이 학생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에서는 학생에 대한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동 조례안의 재검토를 권고했는바,⁹⁾

조례 제정에 있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이 충분히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교육청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4) 학교 내 출입 관리 등 안전 대책에 대한 의견(안 제6조)

- 한편, 안 제6조는 학교장이 학교 구성원의 안전과 교육활동의 보호를 위해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 시설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그러나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라는 학교 시설 출입의 허가 기준이나 안 제6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출입 제한 기준이 학교장 등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출입 허가 또는 제한 요건과 범위 등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을 명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교육기본법」 제5조제3항은¹⁰⁾ 학부모와 지역주민 등이 법령에 따라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를 비롯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것 역시 우리가 보호해야 할 시민의 권리라는 점에서 동 조문은 교육활동의 보호라는 목적을 실현하되 침익적 요소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제6조제2항 각호가 정하고 있는 출입 제한의 요건은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나 “교육활동을

9) 「자치법규·단위사업 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서」(조례안 [별첨 5]) 참조

10) 「교육기본법」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방해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규정되어 있어 그 의미가 학교장이나 교직원 등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학교 방문자가 교육활동을 침해한 경우 학교 출입을 영구히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나 학교 시설 전체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인지 등이 불명확하고, 교육활동 침해 수준과 관계없이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장이 학교 방문자 등에게 과도한 제한을 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동 조문에 대해서는 각호를 신설하여 학교 출입의 제한·허가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활동 보호라는 조례의 취지와 시민의 기본권 보장이 조화롭게 영위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참고로 이는 제6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학교 시설 출입의 허가 요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바, 해당 조문에서도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도록 조문을 수정하거나 각호를 신설하는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학교 교육활동 보장에 대한 의견(안 제7조)

- 안 제7조는 교육감에게 학교가 외부기관으로부터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간섭이나 자료 제출 요구 등을 받지 않도록 하고, 학교가 부당한 민원이나 법적 분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원 대상 심리적 회복 프로그램 개발, 학생에 대한 상담과 치료 등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안 제7조제1항이 규정하는 학교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요건이 모호하여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통해 학생과 보호자 등의 권리를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조문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 현재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당한 교원을 보호·지원하는 「교원 지위법」 제15조에서는¹¹⁾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범위를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안 제7조제1항에서 규정되는 ‘부당한 간섭이나 자료 제출 요구’의 성립 요건에 관해서는 최소한 관계 법령 수준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더욱이 법령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는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막론하고 해당 법령에 따라 규율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자료 제출 요구나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감의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자칫 지역사회나 보호자 등의 학교 운영 참여와 지방교육행정에 대한 지방의회 등의 감시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조문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한편, 안 제7조제2항제2호와 안 제7조제3항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 대응을 위한 소송비 지원이나 심리적 회복 및 교육력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의 적용 대상을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학교 구성원 간 형평성 관점에서 문제로 지적됩니다.

○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학교에는 교육활동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강사 등이 엄연히 활동하고 있음에도 동 조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적용 대상을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은 학교 구성원 간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 특히, 동 조례안이 「교원지위법」처럼 교원의 지위와 교육활동 보호 전반을 다루는 내용이 아니라 “교육주체 상호 간의 협력하고 존중하는

11) 「교원지위법」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다음 각호의 행위 중 하나로 적시함.

1.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학교 문화 조성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교육활동에 직접 참여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구성원 모두의 권익 보호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안 제7조제2항제2호와 제7조제3항의 “교원”을 “교직원”으로 수정하여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시행될 수 있도록 포괄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지원팀장	이준석 2180-8263	입법조사관	김지수 2180-8264
----------	------------------	-------	------------------

관계 법령

유아교육법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 <2012. 3. 21.>
5. 삭제 <2012. 3. 21.>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제20조(교직원의 구분) ① 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유치원에는 교원외에 계약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
- ③ 유치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교직원의 임무) ① 원장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

- ② 원감은 원장을 보좌하여 유치원 업무를 관리하고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원감을 두지 아니하는 유치원은 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활동을 지원하며, 유아를 교육한다.
-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
- 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교원을 둔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 다만,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각종학교에는 제1호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둔다.

②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

③ 학교에는 원활한 학교 운영을 위하여 교사 중 교무(校務)를 분담하는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④ 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제6조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하며,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교육기본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28호, 2020. 2. 4., 타법개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보호자)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4조(교원) ① 학교교육에서 교원(教員)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②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원은 교육자로서 지녀야 할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교원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

⑥ 교원의 임용·복무·보수 및 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 2021. 9. 24.] [법률 제17952호, 2021. 3. 23., 일부개정]

제14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된 조사·관리 및 교원의 보호조치
2.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및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
3.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관리
4. 그 밖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시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① 제3항에 따른 관할청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교육활동 침해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② 보호조치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3.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③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의 경우에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부장관
2. 공립·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감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⑤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 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의 범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